

20세기 한국에서의 제노사이드

김 동 춘(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1. 머리말
2. 일본 제국주의 지배 하의 학살
3. 학살의 백화점으로서의 한국전쟁 전후 학살
 - 1) '내부의 적' 집단처형- 국민보도연맹원, 형무소 수감자 학살
 - 3) 전투상황에서의 학살
 - (1) 미군에 의한 학살
 - (2) 한국군, 경찰, 우익단체에 의한 학살
4. 한국전쟁 후 학살
 -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과정에서의 학살
5. 맺음말 - 과시즘과 20세기 한반도에서의 학살사건

1. 머리말

20세기 한국의 역사는 여러 가지 종류의 정치폭력, 정치적 살해, 학살(massacres)로 점철되어 있다. 가해 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일본제국주의, 미국, 대한민국의 군경 청년단체, 북의 군 등 실로 다양하다. 준식민지 혹은 식민지 지배 하였던 1945년 이전에는 주로 일본군에 의해 고문, 체포, 구금, 살해, 집단학살이 자행되었고, 1945년에서 1953년에 이르는 한국전쟁 기간에는 한국군과 경찰, 우익조직, 및 북 인민군에 의해, 그리고 이후 현재까지는 4.19 발포사건 및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 전후 한국군에 의해 그러한 폭력이 행사되었다. 이 중 한국전쟁 시기는 전쟁기라는 특수 조건의 의해 가장 대규모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그 방법역시 대단히 잔인하였다. 군사정권 이후의 정치폭력과 학살은 통상 제3세계 군부정권 하에서 발생한 것과 유사한 양상을 지니고 있다. 우선 이러한 정치폭력 중에서 '학살'(massacre) 혹은 집단학살(genocide)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 어떤 사건인지, 그리고 피해자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와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물론 국가권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를 모두 학살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1948년 유엔 제노사이드 회의(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the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에서는 학살이 전쟁 중 발생했던 평화 시에 일어났던 간에 국제법을 위반하는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집단학살(genocide)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1) 특정 집단의 구성원을 살상
- 2) 특정 집단의 구성원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히는 일

- 3) 특정 집단의 삶의 조건을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파괴할 계산 하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일
- 4) 특정 집단의 출생을 가로막을 목적으로 어떤 조치를 가하는 일
- 5) 특정 집단이나 다른 지방의 어린이들을 강제적으로 이주시키는 일

이처럼 유엔에서는 특정의 종교, 인종, 종족, 민족 집단의 부분 혹은 전체를 파괴할 목적으로 저질러지는 살해 행동을 지칭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1970년의 캐나다 정부가 규정¹⁾ 학살의 정의는 앞의 규정과 동일하나 ‘식별가능한 집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즉 피부색, 인종, 종교, 종족 등의 차원에서 식별가능한 집단을 대량으로 죽이는 일을 학살이라고 본 것이다. 미국의 상원도 ‘유엔 제노사이드 협약을 인준하면서 학살이란 “어떤 민족, 종교, 종족, 인종 집단을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파괴하려는 목적을 갖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결국 이 모든 정의에는 가해자가 특정 집단을 없애려는 의도를 가진 행동이라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 즉 특정 집단을 전멸 혹은 파괴시키려는 ‘의도’(intention)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상대방 국가나 집단의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는 일과는 구별된다는 점이다. 칠크와 조나슨(Chalk and Jonasson)은 집단학살을 “국가와 여타 권력체가 ‘악’을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는 집단이나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는 특정의 집단을 파괴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대량 살해하는 양상”이라고 정의하였다.²⁾ 그들은 모든 전쟁이란 곧 양측이 방어력을 갖춘 것을 의미하므로 집단학살과 전쟁을 차별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집단 학살을 가하는 측에서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위협을 제거하고,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적에게 공포심을 확산시키고, 경제적 부를 획득하며, 특정의 신조, 이론이나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고 말한다.

물론 앞의 모든 정의에는 가해자 측의 의도성(intention) 문제, 그리고 전쟁 혹은 준 전쟁상황과 집단학살의 경계선 문제 등이 애매한 것은 사실이나, 이들의 정의를 기초해본다면 “대량 학살이란 국제법 혹은 교전당사자 간의 전쟁규범과 규칙을 무시한 채, 정당한 법적 절차나 재판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국가권력과 그와 연관된 권력체가 정치 경제적 목적 하에 자신과 적대하는 특정의 인종이나 민족, 정치적 신념을 가진 비무장 집단을 일방적으로 살해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³⁾ 집단학살을 자행하는 주체는 반드시 군과 경찰과 같은 국가기관이 아닐 수도 있으나, 민간단체나 특정 폭력 집단이 적대관계에 있는 인사나 집단에 대해 학살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그것은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해주는 공권력의 비호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순수한 민간 집단 차원의 대량학살을 있을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학살, 집단학살은 반드시 전쟁 시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쟁은 학살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환경을 조성해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20세기 한반도에서 일어난 학살은 일제 식민지 시기(1905년 전후의 사실상의 식민지 시기) 조선인의 저항에 대한 보복으로 자행된 일제의 비무장 조선인 집단살해 사건들, 1948년 4월 이후 제주도와 여수, 순천에서의 좌익 토벌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집단 살해, 한국전쟁 전후의 대한민국 군, 경찰, 우익무장단체, 북한의 인민군이나 무장한 좌익세력에 의해 저질러진 집단 살해, 4.19 당시의 발포사건,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민

1) Office Consolidation of the Criminal Code, R.S.C., 1970, cc, C-34, C-35.

2) Frank Chalk and Kurt Jonassohn, The History and Sociology of Genocide : Analyses and Case Studies, New Haven & London : Yale University Press, 1990,p23

3) 대량의 학살(mass murder)을 지칭하는 영어의 표현은 genocide, massacre, holocaust 등이 있는데 이 중 genocide는 인종적,민족적 갈등으로 발생한 대량학살을 주로 지칭하는 개념이라면, holocaust는 국가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멸’, ‘대학살’을 주로 지칭한다고 볼 수 있으며, massacre는 단순한 대량의 학살을 지칭한다. 그러나 앞의 칠크와 조나슨의 정의처럼 genocide를 모든 경우의 정치적 대량학살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일반화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전쟁 당시의 대량학살, 혹은 학살은 genocide 혹은 holocaust와는 다소 거리가 있고, 그냥 massacre로 부르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간인 살해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벗어난 지 불과 3년이 지난 이후 발생한 4.2 사건과 한국전쟁 시기 한국인 자신에 의해 '동족상잔'의 형태로 저질러진 집단치형 혹은 학살 사실들을 보면 권력의 담당 주체만 바뀌었을 뿐 권력행사의 방식 그 자체는 일제시기의 것이 반복되는 인상을 받게 된다.

20세기 모든 나라에서의 학살이 그러하듯이 1945년 이후 한국에서의 학살도 인민군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면 1945년 이전에는 제국주의에 의해, 1945년에는 극우반공주의에 의해 주로 뒷받침되었다. 정치, 법, 이데올로기적으로 볼 때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은 일제시기의 그것과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과시즘적 논리와 極右反共主義가 바로 그것이다. 이승만 정권의 극우반공주의는 공산주의는 무조건 제거되어야 하며, '반공'이라는 무엇이든지 용서한다는 논리에 기초해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의 학살을 정당화해주는 정치적 조건이었다. 그것이 제도적 차원에서 구체화된 것이 국가보안법인데, 1948년 여순사건을 빌미로 한 국가보안법의 제정은 이승만 정권의 좌익 척결 작업이 일제말의 사상범 통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식민지 지배의 기둥이었던 治安維持法(國家保安法), 戒嚴令, 豫備拘禁令, 思想轉向制度(保導聯盟)가 '좌익세력'을 통제하는 정책으로 활용되었으며, 정치적 반대세력을 무조건적으로 구속, 학살하는 법적인 근거로 작용하였다. 국민보도연맹의 조직이 식민지 시기 관리로서 복무했던 당시 관료, 법조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전쟁 발발 후 그들을 체포한 법적인 근거도 일제 하의 예비구금령이었다. 특히 계엄령은 미군정에 의해 폐지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식민지 악법이었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제주도 4.3 사건을 비롯한 전쟁 시 학살 사건을 실질적으로 정당화해준 법적인 근거가 되었다. 즉 신생 대한민국의 법적, 행정적 지배체제가 식민지 시기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었고, 그것이 전쟁 발발 전후 작동하여 민간인 학살을 뒷받침하였다.

그래서 일본, 미국 등 외세에 의한 학살을 제외한다면 20세에 한국인들 간에 발생한 학살의 경우 가해세력이 동일하거나 일련의 연속성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살해의 양상도 대단히 유사하다. 1948년 남한에서의 극우정권 수립은 곧 '우익'을 구 식민지 세력의 부활로 표현되었는데, 국가의 억압기구인 군대와 경찰이 그대로 살아남아 대한민국의 기초를 닦았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일본 군대의 문화가 일군출신으로 구성된 한국 군인들에 의해 그대로 답습되었다. 당시 한국 경찰 역시 일제 시 배운 고문과 폭력행사의 습관을 그대로 몸에 지니고 있었다. 특히 일제시대에 그러하였듯이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공공연한 고문과 폭력이 이루어졌다.⁴⁾ 군인과 경찰들은 4.3 사건당시나 한국전쟁 당시에 나타났던 잔인한 학살의 방법은 일본군이 남경대학살 당시에 사용했던 방법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이었다.⁵⁾ 한국전쟁 당시 공식적으로 한국 경찰은 과거의 일본경찰과 달리 검을 휴대하지는 않았으나 실제 군인들은 일본도를 공공연히 소지하여 4.3 사건이나 여순사건 당시부터 민간인 처형에 사용하기도 했다. 군과 경찰의 이러한 야만적 고문과 학살방법은 70년대 유신체제 하에서 나타난 바 있으며, 80년 5.18 당시에 또 한번 재연된 바 있다.⁶⁾

그러면 시기별 학살의 사실과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2. 일본 제국주의 하의 학살

사르트르(Sartre)와 쿠퍼(Kuper)는 식민지 지배체제에 대한 저항세력을 없애기 위한 제국주의의 반계릴라 진압 작전은 그 자체가 무차별적인 학살에 기초해 있을뿐더러, 지배체제 그 자체가 넓은 의미의 학살이라고 지적한 바 있

4) 동아일보, 1950.4.20.

5) Iris Chang, *The Rape of Nanking*, Massachusetts: Basic Books, 1997

6) 고문은 물론 식민지 이전의 봉건체제 하에서부터 존재하였다. 그러나 제국주의 지배 이후 오히려 더욱 일반화되었다. 일제가 사용했던 고문 방법은 주로 전기고문, 통닭구이, 비너꽃기, 손톱뽑기 등이었다. 1980년대까지 한국의 중.고등학교에서는 식민지 하 일본의 군대와 학교에서 시행되었던 체벌들이 공공연히 이루어졌다.

다.7) 제국주의 지배에 대한 저항세력과 그 가족에 대한 보복적인 테러, 강제이주정책, 노동력 강제동원, 여성의 성 노예화 등 국가 테러는 사실상 학살이라고 불리도 무방할 것이다.

식민지 지배 하에서 일본이 저지른 학살은 19세기말 동학군 잔류세력 소탕, 1908년 전후 의병의 근거지를 초토화시키는 '南韓大討伐' 작전 과정에서 提川 등지의 마을을 완전히 불태우고 주민을 전멸시킨 일,⁸⁾ 그리고 1919년의 제암리 학살 등을 기억해 낼 수 있다. 맥켄지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일본군은 조선 의병의 습격을 받아,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천, 충주, 제천 등지의 민간인 거주 지역에 들어가 동네를 불태우고 주민을 학살했다고 한다. 특히 제천의 경우는 피해가 대단히 심각해서 “자신은 도시가 그렇게 완전히 파괴된 곳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가 말했듯이 제천은 지도에서 없어져 버렸다.⁹⁾ 이러한 보복적인 학살은 3.1 운동당시에도 재연되었다. 일본군은 3.1 운동직후 화성의 우정면 사무소 습격사건, 화수 주재소 습격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4월 15일 화성의 제암리를 포위하여 동네 주민들을 교회당에 집결시킨 다음 어린이 포함한 24명을 학살하였다. 그리고 4월 9일 수비대가 고주리에 들이닥쳤는데, 가가호호 수색하여 발안지서에 끌고 갔다. 그 이후 가족 6명을 포박 참살하였다. 일본군은 군도로 목을 치고 몸체에 난도질을 해서 짚을 날라서 불을 질렀다. 한편 독립군 근거지에 대한 학살은 1920년대 이후 만주지방에서 자행되었다. 구체적인 예로는 1920년 나카노(中野清助) 부대의 지휘하에서 이루어진 서간도의 한국인 학살, 그리고 청산리 전투 이후 조선인 독립운동 근거지를 없애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신대학살’(庚申大虐殺) 등을 들 수 있다.¹⁰⁾ 당시 일본군은 提岩里에서 그러하였듯이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가족과 시체를 불에 태워버리는 방법을 사용하였다.¹¹⁾ 이러한 방법은 이후 관동군의 만주 토벌과정에서 반복되었으며 사실상 중국에서의 南京 대학살 이전에 발생한 것들이다. 남경 대학살은 이러한 학살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결국 남경대학살의 예고편은 바로 한반도에서의 학살이었다.

제국주의는 군대와 경찰 등 폭압적인 억압기구를 전면에 내세워 식민지를 지배하였는데, 비록 노골적인 집단학살은 예외적으로 존재했으나 조선인 저항세력을 체포, 고문, 처형하고 그의 가족들의 삶의 근거지를 박탈하였다. 그리고 일제 말기에 일본은 조선인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일련의 동화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조선인 여성을 일본군 성노예로 동원하였고, 청년들을 강제노역에 동원하였다. 이러한 제국주의 지배정책은 극우국가주의, 인종주의에 기초해 있었기 때문에 세계 여러나라에서 학살을 정당화했던 정치사회적 조건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조선인과 중국인을 집단학살했던 그 일본군과 경찰 출신의 조선인들이 곧바로 이후 대한민국의 군과 경찰의 주력부대가 되어 1945년 이후 ‘반공’의 명분 하에 본격적으로 동족을 고문, 구타, 살해하게 된다는 점이다.

3. 학살의 백화점으로서 한국전쟁 전후 학살

한국전쟁 당시의 대량학살은 이미 전쟁 당시 영국 노동당 기관지인 데일리 워커(Daily Worker) 등 좌파 잡지에 의해 국제사회에 일부 알려졌고,¹²⁾ 북한의 언론은 미군과 한국군이 저지른 학살에 대해 전쟁 당시부터 계속 비난하면서

7) Sartre, J.P. "On Genocide", Leo Kuper, 1981, *Genocide :Its Political Use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p44-47에서 재인용

8) F. A. McKenzie, *The Tragedy of Korea*, Seoul:Yeonsei University Press, 1968, p194

9) F. A. McKenzie, p195

10) 徐中錫,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1, pp205-212.

11)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학살한 다음, 불에 태워 증거를 없애버리는 방법은 제암리, 고주리 등지에서 자행되었다. 金善鎭, 『日帝의 虐殺 蠻行을 고발한다』, 미래문화사, 1983 참고.

공격을 취해오기는 했다.¹³⁾ 그러나 한국전쟁 전후 학살은 여전히 완벽하게 은폐되어 있으며 50년 이상이 지난 지금 까지도 사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전쟁 시 학살의 상징처럼 되어있는 베트남 미라이(My Lai)의 양민학살,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90년대 이후 보스니아, 코소보, 그리고 르완다 등지에서 발생한 학살은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으나 한국 전 당시의 미군과 한국군에 의한 양민학살은 외국인에게는 물론 한국인 자신들에게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사실 미국 측과 한국정부는 인민군, 혹은 좌익의 잔학성을 늘 강조해왔으면서도 이들에 의한 학살 역시 규모나 양상 역시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¹⁴⁾ 이러한 사정 하에서 대한민국은 아직 국군과 경찰에 의한 학살을 濟州道 4.3사건이나 居昌 사건처럼 군의 가해 사실이 확인되고 어느정도의 정부 차원의 공식 자료가 확인되고 피해자들의 끈질긴 노력과 여론에 의해 명백하게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특별법 제정과 진상조사 작업에 착수했고, 그것을 토대로 미온적이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려 하고 있다.¹⁵⁾

한민족 내부의 상호갈등과 극단적인 적대는 이미 6.25 월전 이전인 미군정이 본격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던 46년경부터 시작되었으며, 부모와 형제, 친지와 동료가 정치 이념에 따라 적과 우리로 극단적으로 구분되는 현상이 이미 6.25 이전에 나타났다. 이미 48년 제주도 4.3 사건과 여순 사건 진압과정에서의 학살, 공비도벌 과정에서의 국군의 무리한 작전수행 등을 목격한 정치가, 외국인, 일부 지식인들은 만약 남북한간에 전면전이 발생한다면 그러한 잔인한 상호 학살의 비극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을 예견하였다. 이들이 당시 우울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좌우 양 정치세력간의 극단적인 적대는 이미 한국전쟁 발발 전에 한반도에 만연하였으며, 50년 6월 25일 북이 38선을 넘었다는 소식은 한반도의 남북에서 이미 저질러지고 있던 좌. 우익간의 휴혈 충돌이 이제는 국가권력에 의해 대규모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알리는 우울한 사인이었다.

1) 내부의 적 집단처형

- 국민보도연맹원, 형무소 수감자 학살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체제 존립의 위협을 느낀 이승만 정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많은 민간인을 처형하였는데, 국민

12) Alen Winnington, "I Saw the Truth in Korea", (Pamphlet), 1950

13) [조선인민보]가 대표적인데, 충북 노근리 지역의 미군에 의한 학살의 경우 당시 조선인민보에서 취재하여 크게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의 과학원역사연구소가 1958년에 펴낸 [조선통사](하)를 보면 “놈들에 의하여 무참히 학살당한 인민들의 수는 수십만에 달하였다. 강점 40여일간에 평양시내에서만 1만 5천명의 인민이 무참히 학살되었다. 국제여맹조사단의 보고에 의하여 보더라도 황해도 한 도에서 놈들에 의해 학살당한 수는 12만명을 넘는 무서운 수자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에 황해도 신천의 한 군에서만 하여도 10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인구의 약 4분의 1인 3만 5천여명을 학살하였다”(과학원 역사연구소, 1989: 417)

14) UN 측이 작성한 대표적인 자료는 Committee on Government Operations, 1954. Korean War Atrocities,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인데 여기에는 사진을 곁들여 북측이 약 1,800건의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하고 있다. 대부분은 미군 포로들에 대한 학대, 학살 사실이 실려있으며 민간인에 대한 학살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한국정부는 한국전쟁 인명피해 총계 99만여명 중 학살에 의한 피해자를 128,936명으로 집계하고 있다(국방군사연구소, 1996). 그러나 이 통계가 어떻게 작성된 것인지 밝혀낸 자료는 없다.

15)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1999년에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전자는 주로 명예회복과 위령사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후자는 진상규명을 포함한 명예회복에 치중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유족들이 보상 및 배상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후자는 최근 피해자 신고를 마감하고 그 중 1,800여명의 명예를 회복시켜 준 바 있다.

보도연맹 관련자와 형무소 수감자에 대한 학살이 대표적이다. 오늘날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보도연맹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전쟁발발 직후 발생한 형무소 피수감 정치범, 혹은 國民保導聯盟원에 대한 집단 처형의 사실은 거의 모르고 있다. 보도연맹이라는 용어는 일제 말기의 체제통합을 위해 결성된 대화숙(大和塾), 시국대응전선 사상보국연맹(思想報國聯盟)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수립 이후 반체제 사상범, 전향자에 대한 선도의 방안으로 吳制道에 의해 고안되어 1949년 4월 21일 결성되었다. 보도연맹은 표면적으로는 좌익 전향자 단체임을 표방하였으나 실제로는 정권주도로 이루어졌다.¹⁶⁾ 보도연맹이 결성되기 4개월 이전인 1948년 12월 제정된 이승만 정권 하의 國家保安法 조항 중에 ‘保導 拘禁’이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결국 그들은 4.3 사건, 여순사건을 계기로 공산주의자를 비롯한 반체제, 반정부 정치범을 감시, 통제하기 위하여 일본의 군국주의 파시즘 체제가 만들어낸 제도를 그대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¹⁷⁾

1949년 6월 15일 서울에서 국민보도연맹 중앙본부가 결성되었으며 이후 전국적으로 조직작업이 시작되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구 남로당과 산하단체 활동 경력을 가진 지수자, 전향자가 속출하였으며 이들이 곧 보도연맹원으로 가입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좌익단체 주도의 시위에 단순 가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물론 중앙에서 할당된 인원을 채우기 위해 일반인들에게 가맹을 독려하거나 이들을 강제로 가입시키기도 했다. 특히 교사, 공무원 등 교육수준이 높은 엘리트층, 정치의식이 높은 여론 주도층을 가입시키기도 했으며, 일반 농민들 중에서는 전쟁 전에 좌익 단체에 가담한 적이 없었으나 농기구, 비료 등을 얻기 위해서 혹은 정부에 잘못보이지 않기 위해 가입한 사람도 많았다.¹⁸⁾ 전쟁 발발직전까지 국민보도연맹 가입자는 전국적으로 약 30만 명에 달했던 것으로 추산되는데, 그 중 적어도 70% 정도는 사상과 이념은 물론 좌. 우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일반 ‘양민’(良民)이었다.

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정권은 각 경찰서에서 파악하고 있던 보도연맹원과 반정부혐의자들에 대한 ‘예비검속’을 실시했다. 즉 6월 25일 치안국장 명의의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이 각 경찰국에 하달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전국 요시찰인을 즉시 구속할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어 30일에는 ‘불순분자 구속 처리의건’이, 7월 11일에는 ‘불순분자 검거의 건’이 각각 하달되었다.¹⁹⁾ 한편 이에 앞서 전쟁발발 직후인 6월 27일 이승만은 특별방송에서 “반란분자는 退治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대전으로 수도를 옮긴 후 6월 28일에는 대

16) 국민보도연맹의 설립목적은 좌익 전향자를 포섭하여 계몽하고, 반공사상으로 무장시킨 다음 이들을 주축으로 민중들에게 반공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동아일보』, 1949.4.23)

17) 일제하에서 사상보국연맹은 사상전향제도와 짝을 이루고 있다. 국가보안법에서 보도구금 제도를 명시하였듯이 예비구금, 예방구금 제도 역시 일제가 治安維持法을 개정하면서 만들어진 조항이었다. 그것은 전향을 하지 않는 완고한 반체제사범을 계속 감시, 통제하기 위한 제도였다(Richard H. Mitchel, *Thought Control in Prewar Japan*, Cornell University Press, 1976)

18) 김기진, 『끝나지 않은 전쟁- 국민보도연맹』, 역사비평사, 2002; 金宣浩, 「國民保導聯盟事件의 과정과 성격」, 경희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2 참조. 심지어는 “빨지산의 뼈를 주웠던 사람”, 그들의 요구에 의해 “짐을 운반한 사람”, “빨지산 친구를 둔 사람” 등 강제로 빨지산이나 좌익에 협력한 경력이 있거나 면장, 조합장, 이사장, 교원, 면서기 등 지역의 여론 주도층도 포함되었다(安濟, 『실록 보도연맹』, 도서출판 삼리, 1990 참조)

19) 관련 자료는 이도영 편역, 『한국전쟁비사1: 죽음의 예비검속』, 월간 말, 2000 참조. 대전 형무소 학살 건을 보고한 미국 측 문서에서는 “처형명령은 의심할 바 없이 최상층부에서(top level) 내려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국방부장관 등의 결정에 의해 처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이승만 대통령이 떠난 뒤 충남도 관사에서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이전군 국방부 정훈국장은 “문제는 대전형무소에 있는 2,000여명의 적색 수감자이다. 이자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으니 막아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그가 발굴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해병 참 제16호’로 분류된 문서에는 당시 해병대 사령부 정보참모였던 김두찬 중령이 성산포경찰서장에 “계엄령 실시 이후 현재까지 귀서에 예비검속 중인 D급 및 C 급 인물 중 총살 미집행자에 대해 총살집행후 그 결과를 9월 6일까지 육군본부 정보국 제주지구 방첩대(CIC)대장에게 보고하라”고 되어 있다(『한국일보』, 2000.1.19) 그러나 보도연맹을 조직한 오제도 검사는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한지희, 1995: 64). 그러나 전국의 거의 전지역에서 예비검속을 통해 처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그의 주장은 신빙성이 약하다.

통령 긴급명령 제1호로 ‘비상사태 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이 내려졌는데, 이 조치령에서는 비상사태 하에서 “적에게 정보제공 및 안내한 행위, 물품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사형’이 선고될 수 있게 되었고, “죄의 심판은 單審으로” 하였고, “판결에 있어서는 증거설명을 생략”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12조에서는 “사형의 집행은 교살 혹은 총살로 한다”고 명시하였다.²⁰⁾ 7월 8일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사법권과 행정권이 군으로 통합되면서 죄의 사범에 대한 구금과 처형이 모두 군의 지휘 하에 이루어지게 되었고,²¹⁾ 7월 12일에는 ‘체포, 구금 특별 조치령’이 발표되어 계엄지역에서 ‘예방구금’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공식적 ‘처형’의 외향을 지닌 학살은 이러한 전쟁 발발직후의 초법적인 명령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실제 경남 위무지구 사령관 김종원 중령은 “이적행위자는 총살하겠다”라는 성명을 발표한 점²²⁾을 고려해보면 이승만 정권의 보도연맹 관련자 처형계획은 전쟁발발 즉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이나 강화 등 경기 서.북부 지방의 경우 6월 25일 직후 워낙 갑작스럽게 인민군이 내려와서 지역차원에서 경찰은 미처 국민보도연맹원을 소집, 구금, 처형하지 못했지만, 경기도의 여주, 평택 이남의 대한민국 전역에서는 인민군이 점령하기 이전에 예비구금을 실시하였다. 7월 중 하순경 남한 전역이 늦은 모내기로 바쁜 무렵 전쟁발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어렵듯이 듣고 있었던 보도연맹원들은 경찰의 소집명령을 받고 정기적으로 있었던 교육이거나 생각하면서 경찰서, 지사로 향하였다. 군은 각 지역의 경찰들에게 보도연맹원을 소집하도록 하였다. 보도연맹원들은 마을의 창고나 학교 등에 격리. 수용되기도 했고, 경찰서에 수감되었다가 심사 분류된 다음, 형무소로 이송되거나 곧바로 처형되었다. 예비검속의 주체는 주로 경찰이었지만, 명령과 집행은 주로 육군 헌병대와 방첩대(CIC), 해군 정보부(G-2), 심지어는 민간 조직도 관여하였다.

국민보도연맹원, 죄의 사건 관련 수감자, 예비검속자들에 대한 학살은 한강이남의 거의 전국에서 발생하였지만 가장 많이 알려진 곳은 大田이다. 당시 대전 형무소에는 4,000여명 이상의(7,000명이라는 설도 있음) 제주 4.3 및 여순 사건 관련자들, 남포당원, 보도연맹 예비구금자들이 수감되어 있었는데, 국방경비법, 특별조치법, 포고령 위반 등의 죄목으로 잡혀있던 사람들은 모두 사상범으로 분류되어 7월 3일에서 6일 사이 그리고 8일에서 10일 사이에 각각 처형되었다.²³⁾ 대구, 부산, 전주, 광주, 마산 등지의 형무소 학살 사건 역시 기결, 미결수를 포함한 죄의관련 사범에 대한 불법처형의 중요사례로 언급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후 대전 이남의 제주도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는 대체로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처형이 이루어졌는데 경남 지역의 피해 규모가 가장 크다.²⁴⁾ 그런데 경북 산간 지역경남 거창 지역, 경남 거제 지역 등에서는 전쟁 전인 49년부터 보도연맹원에 대한 학살이 이루어졌는데, 이 경우는 ‘빨갱이’ 토벌의 일환으로서 보도연맹원 가입자 처형이 이루어진 사례라 볼 수 있다.

전시체제 하에서 적에게 협력할 위험성이 있는 ‘정치범’에 대한 통제는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전향한 사람들, 그리고 자의와 무관하게 그 조직에 가입한 사람들 모두를 ‘적’으로 분류하여 단순히 시민권만 제한한 것이 아니라 생

20) [한국전란1년지] 부록에는 ‘처벌’이 아닌 ‘처단’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고, 6월 25일에 발표한 것으로 되어 있다(c48쪽). 그러나 이 책의 다른 면의 일지에는 6월 28일 발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명칭도 ‘처벌’로 되어 있다(b7쪽). 전쟁 당일 이러한 초법적인 특별조치령을 발동했다는 기록을 어디에도 찾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6월 28일 발표하였으며, 소급적용하기 위해 25일로 날짜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21) “전시에 계엄령을 발포하는 것은 군인과 평민을 동일하게 단속해서 군사행동에 지장이 없게 하는 것이니...” (이승만, 『이승만박사 담화집』 공보처, 1953, 164쪽)

22) 김기진, 앞의 책, 90쪽.

23) “1950년 7월 8일 낭월동을 기억하라”, 『말』, 2000.2; Winnington, Alan, 1950

24) 金宣浩, 앞의 논문, 45-46쪽.

명을 박탈한 것은 공권력에 의한 정치적 학살(political genocide)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이 공격을 개시한 이후 이들 보도연맹원이나 구 좌익활동가들이 이승만 정부를 향해 봉기를 일으키거나 후방에서 대한민국 군대와 경찰을 향해 공격을 했다는 어떤 징후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예비구금과 불법적인 처형을 실시한 것은 이승만 정권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즉 이승만은 북한의 침략이라는 위기 상황을 정권 내 비판세력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한 것이다. 이후 이승만 정권은 좌익활동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피학살자 모두를 ‘좌익’으로 분류하였으며, 유가족들에게는 ‘부역자’의 딱지를 부여하였고, 연좌제의 멍에를 씌웠다. 이후 오늘날까지 이들 피학살자 가족들은 국가 내의 非國民, 사실상의 ‘이등 국민’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을 갖는 것은 이 보도연맹 학살 과정에 미국이 실제로 개입했는가 하는 점이다. 48년 제주도 4.3 사건, 여순 사건에서 미국은 반란군의 토벌 작전과 이후 ‘반란군’에 협력한 민간인 처형을 수수 방관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민간인 학살에 책임을 갖고 있었다. 당시 신생 한국군과 한국인 지휘관들이 실제로는 미군사고문단의 절대적인 지휘하에 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 군 수뇌부 혹은 방첩대(CIC) 등이 독자적으로 처형을 명령했다고는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7월 8일 계엄령 선포 이후, 특히 7월 14일 한국군의 작전권이 UN군 즉 미군에 이양된 이후 군의 모든 작전은 미국의 관할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최초의 ‘요시찰인 단속’ 혹은 ‘불순분자 구속 처리’ 등 내무부의 명령에까지 미국이 개입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이들 예비구금자를 선별, 처형하는 극히 중요한 정치적 결정과정에 이승만과 한국정부가 미국 측의 의사를 타진하지 않고 서 단독으로 결정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특히 대전형무소 학살 관련 기록 사진에는 1948년 여순 사건 현장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처형 현장을 감독, 참관하는 미군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서 미국이 이 학살의 전 과정을 미리 알고 있었으며 처형과정에서도 입회하여 모든 과정을 감독한 것으로 추측된다.

2) 전투상황에서의 민간인 살상

(1) 미군에 의한 학살

한국전쟁은 처음에는 남과 북의 군대, 나중에는 UN군과 북의 인민군, 중공군 간의 전투였지만 실제로 전쟁초기 한국군을 제외한 UN군의 96%는 미군이었고, 미국동군사령관인 매카서(MacArthur)가 UN군 사령관의 역할을 겸임하였으므로 미국은 전쟁의 실질적인 당사자였다. 미국의 개입은 6월 27일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참전결정으로 합법화되었지만, 개입의 범위를 단순히 인민군의 침략을 격퇴하는데 그치는 것인지, 38이북 지역을 점령하는 것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있었다. 한국전에 참전한 미 8군은 인민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한 기술력, 화력, 제공권을 과시하였지만, 초기에는 일본에 주둔하던 미군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전쟁의 원인은 물론 한국의 사정과 역사를 알지 못하는 지휘관과 병사들이 작전 과정에 방해되는 많은 민간인들을 살상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피난민 속에 적이 침투했다는 루머는 미군을 극도의 공포(panic) 상태에 몰아넣었으며, 이 때부터 미군은 네이팜 탄 등 비인도적인 대량살상 무기를 포함한 엄청난 양의 폭탄을 공중에서 투하하였으며 기총소사, 함포 사격 등의 방법으로 많은 민간인을 희생시켰다.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최근에 밝혀진 노근리 사건을 제외하고는 한국전쟁의 역사에서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다. 앞에 언급한 워닝턴 기자는 전쟁 초기 현장을 목격한 이후 “미국이 한국에서 하는 일이 나이게 충격을 주었으며, 그것은 나찌가 자행한 최악의 행동보다 더 잔혹하다”²⁵⁾고 지적하기도 했다. 베트남전에서의 미라이 학살은 당시 책

임자가 재판을 받기도 해서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지만, 한국전 당시 미군에 의한 피난민 주민 살해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또 학살로 인정되지도 않고 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노근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한 미 양측으로 구성된 양자조정그룹(BCG :Bilateral Coordination Group)의 조사결과 발표 후 성명을 발표하여 미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실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시하였으나, 공식 명령 사실은 부인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BBC 방송에서는 미군 지휘관이 피난민을 적으로 취급하도록 하고, “Kill them all”의 명령을 내린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동안 무수한 민원이 제기되어도 독자적인 조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독자적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 단지 현 한국 행정부에서 노근리 명예회복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을 따름이다.

현재 한국의 국방부에 접수된 미군 피해지역은 60군대를 넘는다. 그 중에서는 공중포격에 의해 불의의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경우는 미군이 민간인임을 확인하고서도 이들을 적으로 의심하여 포격, 폭파, 기총소사, 집중 사격을 감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노근리 사건 외에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미군 측의 공중 폭격, 기총소사, 혹은 함포사격으로 인한 피해의 사례는 50년 8월 왜관 덕성교의 폭파로 피난민 수백명 이상 사망한 사건을 비롯하여, 충북 단양 영춘면의 300명, 고령군 덕성교에서의 수백명, 경북 구미의 100여명, 경북 예천군 보문면의 50여명, 경북 의성의 17명, 경북 포항의 수백여명, 경남 창녕의 60여명, 함안의 30여명, 의령의 30여명, 사천의 60여명, 마산의 80여명, 익산의 300여명, 여수 앞 바다의 수백명 등이다.²⁶⁾ 특히 익산에서 7월 11일 발생한 미공군기 B29 기의 폭격은 아직 전쟁 발발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주민들은 “전쟁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 피난가는 사람 하나 없는 평화로운 상황”에서 민간인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경남 창녕, 마산, 사천 지역의 폭격 역시 인민군이 이 지역 근처에도 오지 않는 비전투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군이 한반도 전체를 초토화하려 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만들어 준다. 당시 미군의 폭격은 “뜰판에서 놀고 있는 햇병아리 한 마리를 보고 수십 마리의 독수리 떼가 달려드는 꼴”이었다.

북한 지역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은 전쟁 당시부터 많이 제기 된 바 있다. 워닝턴(Winnington) 기자는 미군의 최초의 원산폭격으로 하루밤에 1,249명이 사망하였으며,²⁷⁾ 두 번의 폭격으로 시 전체가 완전히 초토화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 측은 51년 7월 11일에서 8월 20일 사이 미국 비행기가 만대 이상의 비행기가 250회 이상 출격하여 4,000명의 무고한 민간인을 죽였으며, 도시 농촌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폭격을 하여 100만 이상의 민간인을 죽였으며 황해도의 신천에서 35,380명 등 점령지에서 민간인을 학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169지역 이상에 804회 이상의 세균 폭탄을 투하하여 수많은 인명을 살상했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확인된 미국 측 자료에 의하면 미군이 황해도의 信川에서 직접 민간인을 학살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 우익들이 앞장서서 자행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모은 학살을 미국 측의 책임으로 돌리는 북측의 주장을 모두 신뢰하기는 어렵다.²⁸⁾ 그러나 당시의 작전권과 한국정부에 대한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미군의 묵인, 및 직접적인 작전 수행이 남북의 많은 민간인을 살상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5) Winnington, ibid, 3

26) 「한국일보」, 1999.10.15.

27) 최근까지 한국에서는 원산폭격이라는 말이 학교와 군대에서 사용되었다. 그것은 손을 뒤로 돌린 채 머리를 땅에 박고 머리로 몸을 지탱하는 집단 처벌인데, 10분 이상을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럽다.

28) 황석영의 소설 『손님』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처럼 신천학살은 우익 치안대가 주로 자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한겨레21」, 2002.4.25). 그러나 현장에서 치안대의 학살을 중지시켰던 미군 헌병대의 중위는 “치안대 대표가 처형이 미 방첩대(CIC)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당시의 행정이 사실상 미군의 관할권 하에 있었기 때문에 미군이 면죄부를 얻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가능하다.

즉 일본에 대한 원폭투하에 대해서도 종종 언급되는 점이지만 미국인 당사자들이 인정하듯이 당시의 미군들이 한국인들을 인종적으로도 멸시하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미군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폭격하거나 남녀를 불문하고 학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²⁹⁾ 한편 대통령인 트루만과 미국동군 사령관인 매카서, 그리고 그의 부관이었던 윌로우비(Willowby), 8군 사령관 리지웨이(Ridgway) 등 작전 명령계통에 있었던 미국인들은 과거의 나치가 유대인을 그렇게 대하였듯이 한국인들에 대해 국(gook)이라고 부르면서 극도의 인종주의적 편견과 우월성을 견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³⁰⁾

(2) 한국군, 경찰, 우익단체에 의한 학살

한편 전쟁초반 한국군에 의해서도 광범위한 학살이 자행되었다. 한국군에 의한 학살은 인민군이 후퇴하고 잔류하는 인민군, 빨치산과 국군간에 산발적인 전투가 전개되던 50년 겨울에 주로 발생하였다. 51년 2월 초순 11사단 9연대가 산청, 거창, 함안지역에 주둔하면서, 인민군의 춘계 공세 이전에 빨치산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작전을 펼치게 된다. 견벽청야(堅壁淸野)라는 명령에 따라 이들 부대는 본격적인 학살을 벌이기 전에 공비 출몰지역의 가옥을 태우는 작업을 했다.³¹⁾ 이것은 49년 겨울 이후 대규모의 빨치산 토벌, 제주도 4.3 사건 이후 제주도에서의 초토화 작전을 반복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적이 세력을 부식할 수 있는 가옥과 주거지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태워 없애고, 굶겨 죽이고, 죽여 없애는” 이른바 3진(三盡), 삼광(三光) 작전이었다. 결국 9연대는 山淸.咸陽.거창에서 수천명의 민간인을 학살하였다. 피학살자의 대다수는 전투능력이 없는 여성, 노인, 어린이들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거창과 산청 사건 이전인 50년 겨울 전남 함평, 전북 남원 순창 등지에서도 대규모의 학살이 일어났다. 南原에서는 공비토벌작전을 감행하던 11사단 9연대 소속 군인들이 대강면 강석리 마을을 습격하여 마을 주민 90명을 대검, 일본도, M1 소총으로 난자한 사건도 있었다. 여기서 70명은 총살당했으며, 19명은 일본도로 목이 잘리우는 참극을 당하였다. 남원에서 양민학살이 일어난 이후 12월 6일 전남 함평에서는 월야면 정산리 동촌마을을 시작으로 1951년 1월 12일까지 3개면 9마을의 500여명의 주민이 토벌대의 습격으로 집단 학살당하였다. 이들 지역은 현재 피해상황이 확인된 곳이지만, 유족이 흩어지고 공식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전라북도의 任實, 淳昌, 阜昌 지역에서도 국군과 그들의 비호를 받은 지역의 우익 단체에 의한 학살이 자행되었다고 한다.

한편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고, 인민군이 북으로 패퇴한 이후 잔류한 부역자들에 대한 집단 처형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인민군과 지방좌익 역시 패퇴하는 과정에서 피수감자나 우익인사들을 처형하였는데, 대전, 서울, 개성 등지에서 광범위한 집단처형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한국군과 미군이 북으로 올라간 이후 경찰, 지방의 우익단체는 부역자들을 색출하여 이들을 집단적으로 처형하는 일도 발생하였다. 경기도 강화, 고양, 파주 등지에서의 현지 경찰의 목인 혹은 비호하게 우익 단체가 좌익 부역자를 처형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것은 사적인 보복의 양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 실상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그 규모 역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

29) 미국이 한국인을 보는 시각은 인디언에 대한 시각과 다르지 않았다. 어린아이, 원시인, 다람쥐, 훈련된 원숭이(trained monkeys) 등이 한국인, 혹은 공산주의자에 대한 시각이었다. 그들은 모든 한국인들에게 ‘국’gook’ (야만인이라는 의미)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Cumings, 1990, 690-697).

30) 트루만과 매카서는 공산주의를 히틀러, 무솔리니 등 나치와 동일시하였으며, 그것은 소련, 중국 등 공산국가를 야만국가로 보던 시각에 기초해 있었다. 매카서의 정보 참모 윌로우비(Willoughby)는 한국인이 ‘무표정한 얼굴을 한 반-인간(half-men)이라고 보았다(Henry et al, 2001, 70). 리지웨이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쓴 편지에서 ‘야만상태의 피조물’(creatures in their natural state)이라고 한국인들을 묘사하였다(Cumings, 1990, 695)

31) 거창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인 50년 12월 14에 이 지역에서 발생한 일이다. 차석규의 증언, 차석규, 59.

다. 지역의 이웃 주민들 간의 보복적인 살육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전남지역이다. 전북지역도 그러했지만 전남 지역의 경우에는 국군과 인민군이 번갈아 지역을 점령하면서, 군인들이 물러간 이후 주민들 사이에서 보복적인 학살이 많이 발생했다. 이 보복적 학살은 단순히 좌우익의 이념상의 구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지주와 소작인 간, 양반과 상민 간의 신분적 차별, 씨족적인 대립과 갈등이 중첩되어 진행되었다.

4. 한국전쟁 후의 학살

1) 4.19 당시 데모대에 대한 발포 사건

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와 4월 18일 이후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면서 발생한 데모대에 대한 경찰의 발포는 단순한 질서유지와 경찰의 자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학살적 성격을 갖고 있다. 원래 3월 마산에서 학생들은 평화적으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이를 강제해산 시키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투석전이 발생했고, 경찰이 무차별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시위는 폭동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4월 11일 김주열군 시체가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사건으로 마산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4월 18일 고대생 시위 후 귀교길 습격사건이 계기가 되어 4.19 전국 총궐기가 가능했다. 고교생 대학생을 비롯한 10만의 서울 시민이 참가하여 시위대의 일부가 경무대로 향하려 할 때 경찰이 발포를 시작했다. 부산, 대구 등지의 지방도시에서도 수십만 학생들이 이승만 타도 시위를 벌였다. 이날 경찰의 무차별 발포로 서울에서만 104명, 부산에서 19명, 광주에서 8명 등 전국적으로 186명이 사망하고 6,026명이 부상하였다. 희생자 중에는 국민학생과 중학생 19명, 그리고 다수의 청소년 하층 노동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데모대와 경찰 사이에서 발생한 충돌의 장면은 46년 대구 10.1 사건, 제주 4.3, 한국전쟁 전후의 경찰의 주민에 대한 폭력행사와 대단히 유사했고,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시대의 그것과 동일했다. 경찰은 어린 학생들을 적으로 취급했으며, 곤봉세례를 받는 학생과 청년들의 저항은 사실상 전쟁터를 방불케 하였다. ‘철없는 아이’들이 사정없이 몽둥이 세례와 발길질을 당하는 것을 본 주변의 방관자들이 데모대에 가세하면서 시위는 폭동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후 20년 이후 광주에서 정확하게 반복되었다. 4.19 당시의 경찰의 폭력진압과 주민살해는 정권붕괴의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이며, 사전에 의도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학살적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과정에서의 학살

한국정부 및 주류 지식사회에서는 80년 5월 광주에서 발생한 공권력에 의한 집단살해를 학살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즉 계엄군과 시민군 간에 전투는 있었으나 학살은 없었다고 보고 있다.³²⁾ 그러나 5월 18일 계엄군의 시위대 진압 과정에서 나타난 폭력은 그 이전의 학살과정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것이었다. 그 전날 전남대에 진입해서 이미 학살의 살기를 보여준 바 있는 공수부대원들은 이날 시위 학생들의 머리를 곤봉으로 때려 쓰러뜨리고 서너명이 달려들어 군화발로 머리를 으깨버리고 피곤죽을 만들었다. 그 다음날에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었다. 공수대원들은 시위대의 포로들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발가벗기고 무리를 짓게 하여 군대 유격훈련장에서 실습하는 가혹한 기합을 주었다. 울챙이 포복, 통닭구이, 원산폭격 등의 잔인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그들이 거세게 저항하면 대검으로 배를

32) (김치년, [월간조선], 1996.4)

절렸다. 그래서 사망자의 사망진단을 보면 처음에는 타박상, 그 다음은 자상, 그리고 총상의 순서로 나오게 된다.³³⁾ 사망자를 보면 학생, 청년뿐만 아니라 노인, 부녀자, 중학생 심지어는 국민학생의 시체도 있었다. “전라도 사람들을 몰살을 시켜도 좋다고 했다면서...”라는 소문이 돌았다. “광주놈들은 모조리 죽여버려야 한다”는 진압과정에서 그들이 내 뱀은 말들은 바로 피학살 집단을 하나의 묶음으로 설정하고, 그들을 비인간화하는 바로 그것이었다.

5월 20일 전면적인 민중항쟁으로 발전한 이후에 발생했던 집단살상은 주로 시위대 진압을 위한 전투과정에서 발생했다. 애초에 돌멩이, 곡괭이 몽둥이 밖에 들지 않았던 시위대가 계엄군에 의해 살해되자 시위대도 무장을 하기 시작했다. 5월 21일에는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난사를 해서 많은 사람이 사망하기도 했다. 22일에서 진압군이 들어오기 이전의 27일까지 광주는 해방구였다. 27일 새벽 3시 30분 계엄군이 광주도청에 투입되었고, YMCA에는 동이 틀 무렵 계엄군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일부는 전투과정에서 살해되기도 했고, 일부는 비무장을 외쳤으나 일방적으로 사살되기도 했다. 이 기간 동안 학살은 광주 교도소 내, 송암동, 지원동 주남마을 등지에서도 이루어졌다. 5월 31일 계엄사령부는 민간인 144명이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편 1982년 ‘계엄사’는 사망자 117명 중 88명은 모두 난동자 자신들에 의한 오발, 민가에 침입하여 일가족 살해 및 금품탈취, 강온 양립에 의한 총격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³⁴⁾

광주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의 민간인 살해를 학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군부 측에서는 이 진압과정에서의 폭력행사와 살해가 사전 계획된 것이 아니며, “시위현장에서의 감정 격화, 특전부대 특유의 기질, 과잉진압과 시위격화, 발포 대응과 군의 자위적 대응의 결과”라고 주장한 바 있다.³⁵⁾ 그리고 계엄군이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당시 시위대의 구성원이 양아치나 강패 등 불순분자이며 이들의 선동에 의한 치안부재로 시민이 떨고 있었으며, 북한의 동태가 수상하고 광주의 시위대 내에도 간첩이 침투해 있다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한 바 있다.

그러나 5월 19일 ‘군 충정작전 추가지시’에 의하면 “도시계털라적 요소 및 난동형태에 대비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시위대를 이미 적으로 간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 학살이 유태인 학살과 같이 정치적으로 준비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충정작전의 개념, 특히 공세적 진압이라는 애초의 진압작전, 황석영의 보고서나 지금까지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한 각종 증언을 종합해 볼 때, 계엄군은 단순한 시위 해산 이상의 목적을 갖고 있었음에 분명하다. 그것은 ‘전라도 사람 일반’을 적으로 규정하고, 이들 중 저항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음으로써 신군부의 정치적 입지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말이다. 김대중 체포와 계엄선포, 경상도와 전라도의 이분법, 그것은 위기에 처한 세력이 공세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장악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양상이다. 그리고 이 위기 상황에서 특정 세력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 학살이 발생한다. 80년 5.18 당시에는 ‘전라도’, ‘불순분자’ 라는 집단이 과거 ‘빨갱이’와 같은 유사 인종적 범주로 자리매김되었다. 이 때 전라도 저항세력에 대한 살해가 정당화되고, 또 계엄군은 그러한 ‘낙인찍기’ 작업을 통해서 자신의 학살을 정당화한다.

물론 5월 18,19일 초기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계엄군의 야수적인 폭력 행사 역시 한국과 다른 나라의 학살 현장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이를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외친 바 계엄군은 “인간이 아니었다”, “같은 민족이라고 볼 수 없었다”, “6.25 때나 베트남에서도 저러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들은 모두가 공수부대의 테모대 및 주민 학살 과정에서의 비인도적 장면을 증언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잡아온 사람들을 마치 노리개처럼 갖고 놀다가 이들이 규칙을 어기면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 역시 제주 4.3 당시, 한국전쟁 당시 군인들이 학살 직전에 민간인들에게 저질렀던 것과

33) 황석영,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풀빛, 1985, 48쪽

34) 최정기, “5.18과 양민학살” 광주광역시 5.18 사료 편찬위원회, 5.18 민중항쟁사, 2001, 410쪽

35) 같은 글, 411쪽

대단히 유사한 것이었다.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작업을 통해 확인된 사망자는 210명인데, 그 중에서 여자가 20명이다. 우선 여성의 사망 사실은 진압이 학살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³⁶⁾ 그리고 남자 중에서도 10대 사망자가 52명이고 그들은 모두 초·중고생이다. 이 역시 단순히 진압이 무장 시민군을 향한 것이 아니라 무차별적인 발포과정에서 많은 청소년까지 살해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5. 결론 - 파시즘과 20세기 한반도에서의 학살사건

한국전쟁 전후의 학살은 정치적 학살(political massacre)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제주도 4.3사건 당시의 학살이나, 전쟁 발발 직후 국민보도연맹원 학살, 전쟁 중 산청, 함평, 남원 등지에서의 ‘초토화 작전’은 모두 정치적 의도의 산물이며, 인종갈등이 보편적인 서구나 아프리카 등지와는 달리 특정 지역민이나 인종을 전멸하려는 것이었다기 보다는 혁명 혹은 극심한 정치 갈등 와중에서 특정 정치세력을 제압하기 위하여 구사된 집단살해였기 때문에 분명히 대량학살(holocaust) 혹은 집단학살(genocide)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 전체를 본다면 한반도에서 ‘공산주의’에 맞서서 반공기지를 구축하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 ‘빨갱이’를 모두 소탕한다는 취지 자체가 집단학살(genocide)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근리 사건 등을 비롯한 미군의 무차별적인 폭격과 주민 살해 역시 이러한 정치 이데올로기 하에서 이루어졌다.

한국전쟁 전후의 학살은 전세계적 냉전체제의 수립과정에서의 극우정권이 수립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대만, 그리스, 베트남에서 발생한 학살과 가장 유사하다. 한국 전쟁 과정에서의 학살은 미국의 전후 동아시아 전략 속에서 일본의 전범에 대한 사면과 자본주의 성장 지원 전략, 남한에서의 일제 식민지 지배체제의 유지 존속과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미국이 그리스(Greece) 등에서 그러하였듯이 대 소련 반공전선 구축을 위해 구 파시즘 세력을 재등장시키게 되자, 민족주의 세력 및 민중들에 이들에게 저항하고, 이들 구 기득권 세력이 저항세력의 공격에 직면하여 강대국의 지원을 받아서 정치적 반대세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대량 학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미국이 이러한 학살의 전 과정을 지휘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의 냉전전략 그 자체가 이미 냉전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피비린내 나는 학살을 예비하고 있었다. 스페인, 그리스와 베트남에서는 모두 전선이 계속 이동하여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불분명한 내전적 상황, 혹은 국내 정치폭력 과정에서 학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한국전의 경우와 대단히 유사하다.

광주 학살의 경우 군부의 재집권을 위해 특정 지역민, ‘불순분자’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정권 등장기의 학살, 니카라과 소모사 정권 등장 이후의 우익 테러와 학살, 과테말라의 학살, 남아공화국의 인종차별과 학살등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전쟁상황이 아니라는 점만 제외한다면 이 역시 한국전쟁기의 학살과 마찬가지로 극우반공주의 체제의 유지라는 정치적 환경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4.19 발포와 광주 학살을 제외한다면 60년대 이후 한국 군사정권 하에서의 국가폭력과 학살은 제3세계 여러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작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의 군부정권이 다른 나라의 극우독재정권에 비해 더 민주적이었거나 인권 옹호적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한국전쟁이라는 큰 산을 넘으면서 제거해야 할 내부의 적은 거의 제거했기 때문일 것이다. 즉 극우세력과 저항세력 간의 갈등이 내전 형태를 지니면서 45년이후 수십년간 지속된 다른 제3세계 국가와 달리 한국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미 내부의 적을 거의 완벽하게 청소하였고, 그 이후 백색정권을 수립하는데 성공하였

36) 최정기. 앞의 글

다. 따라서 이후의 학살은 사실상 새롭게 태어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고문, 구타, 전향공작 등의 국가 폭력의 형태로 80년대 말까지 유지되었다.

무장한 군인들이 상대방 군인만을 적으로 삼지 않고, 주민 전체를 적으로 간주하여 사냥하듯이 학살하거나 ‘초토화’시키는 집단 살상이 과연 근대 제국주의 일반, 혹은 바우만(Bauman)이 말하는 것처럼 근대 합리주의와 동전의 다른 면을 이루면서 근대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군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 지배체제에 독특한 것인지에 대해서 향후에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대체로 알제리, 베트남, 중국 등 제국주의의 식민지 저항세력에 대한 탄압이나 게릴라전 진압 과정에서 이러한 유형의 학살의 방법이 빈번히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은 극우 반공주의를 내세운 제국주의 지배체제 자체에 이러한 학살의 개연성이 잠복되어 있으며, 구 파시즘 세력이 위기에 처했을 때 반공주의, 인종주의 담론과 더불어 이러한 집단 살상의 방법이 동원된다는 점이다. 한국 전쟁당시 한국정부의 사상범 통제와 이후의 처형 작업, 제주 4.3, 그리고 전쟁 발발 후 한국군에 의해 저질러진 학살은 ‘극우 반공주의’ 하에서 저질러지고 정당화되었지만 사실상 한국에서는 類似 인종주의(“빨갱이” 담론)적 성격을 갖고 있었으며, 내전이라는 전쟁 자체의 물리적 성격과 더불어, 일본과 한국에서의 냉전의 구축과정에서 구 파시즘 세력이 부활하는 것과 같은 맥락 속에 있다.

<참고문헌>

국방부정훈국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란1년지』, 1951

김기진, 『끝나지 않은 전쟁- 국민보도연맹』, 역사비평사, 2002.

김득중, “여순사건과 제임스 하우스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순사건 53주년 기념학술 세미나. [여순사건의 진상과 국가테러리즘], 2001.10.19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0

金宣浩, 「國民保導聯盟事件의 과정과 성격」, 경희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2

金善鎭, 『日帝의 虐殺 蠻行을 고발한다』, 미래문화사, 1983

박명림, [1950, 한국 전쟁과 평화], 나남, 2002

白善燁, 『길고긴 여름날, 1950년 6월 25일』, 지구촌, 2000, 232쪽.

安濟, 『실록 보도연맹』, 도서출판 三和, 1990

이도영 편역, 『한국전쟁비사- 죽음의 예비검속』, 월간 말, 2000.

李應俊, 『李應俊 自叙傳 - 回顧 90년- 1890-1981, 1982 사단법인 汕경기념사업회

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통사](하), 오월, 1988

Bix, Herbert, 2001. War Crimes Law and American Wars in the Twentieth Century Asia , Hitotsubashi Journal of Social Studies 33(2001)

Committee on Government Operations, 1954. Korean War Atrocities ,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Cummings, Bruce,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2 : The Roaring of the Cataract, 1947-1950, Oxford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Dowd, Doug, 1997. Cry Havoc and let slip the Dogs of War: Macthyism, Korea and Other Nightmares , Monthly Review, April 1997.

Edwards, Paul M. 1986. To Acknowledge A War: The Korean War in American Memory, Westport: Greenwood Press

Meador, Daniel J (ed). 1998. The Korean War in Retrospect : Lessons for the Future,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Gittelsohn, John. 1990. War and Remembrance : Forty Years on, The Origins of Korean War inspire Debate and Reassement ,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 (July) : 32-33

Halliday, Jon and Bruce Cumings. 1988. Korea : The Unknown War, New York : Pantheon Books.

Henley, Charles J., Sang-Hun Choe, Martha Mendosa. 2001. The Bridge at No Gun Ri : A Hidden Nightmare from the Korean War,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LLC

Johnson, Chalmers, 2001, Blowback: The Costs and Consequences of American Empire,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Kaufman, Burton I, 1999. The Korean Conflict, 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Press

Kuper, Leo, 1981, Genocide :Its Political Use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Merrill, John, 1989, Korea: The Peninsula Origins of the War, Newark: University of Delaware Press.

Winnington, Alan, 1950, I Saw the Truth in Korea, London: Peoples Press Printing Society Ltd.

Shen, Zhihua, 1996/1997. The Discrepancy Between the Russian and Chinese Versions of Maos 2 October 1950 Message to Stalin on Chinese Entry into the Korean War : Chinese Scholars Reply , The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